

#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 (9월)」 참가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창업진흥원장

##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진출 및 판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시기·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상품 지정 심사(9월) 시, 기관추천 트랙 가점(2점) 부여

### < 등록상품(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절차 >

① 창업기업 모집 및 검토	② 기관추천	③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④ 조달청 심사**	⑤ 벤처나라 상품 등록
모집(8.20.) 및 요건검토(8.21.) 창업진흥원	중기부 → 조달청 중기부	벤처나라 온라인 직접 신청 창업기업	기술품질 및 공공 수요 적합성 평가 조달청	지정 결과 발표 후 입점 등록 창업기업
~'25. 8. 20.	~'25. 8. 26.	'25. 9. 1. ~ 9.12.	~'25. 9. 30.	'25. 10. 1. ~

\* 선정 시, ③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추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선택

\*\* 추천받은 기업은 ④ 조달청 심사 과정(기술품질평가)에서 "가점 2점" 부여  
(가점은 선정된 추천 회차에만 적용됨)

##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 ①,②번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 벤처나라 지정심사('25. 9. 30.)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②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2b.go.kr:8053)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기업

\* 해외 제조 OEM, 용역, 공사는 신청 불가능

\*\* 물품식별번호 발급 방법은 [별첨1]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매뉴얼 참고  
신청 후 약 8일의 심사기간 소요됨에 따라 모집 마감 일정 고려하여 사전 신청

### 2025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
- ② 창업기업 확인서 첨부 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③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지정 제외 대상)

1.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5.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인 경우
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
8. 제31조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  
(단, 기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9. 기타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7. 21. (월) ~ 2025. 8. 20. (수), 16:00까지

-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전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1단계 약관동의 완료)에 한하여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및 최종 신청 등은 허용됨**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 모집공고」 신청

- ①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본 공고 검색 후 클릭 → ④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구분	참고사항	비고
참가 신청서	▪ 신청에 필요한 기본 정보 입력	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창업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a href="http://cert.k-startup.go.kr">cert.k-startup.go.kr</a> ) ▪ 벤처나라 지정심사(25.9.30.)까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증빙 불필요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확인)
물품식별번호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물품식별번호, 제품분류 및 제품명 등 필수 정보 입력	온라인 신청 시 입력

### 4

### 요건검토 및 추천

□ 요건검토 : ①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유효 여부, ② 조달청 목록정보 시스템 물품식별번호 발급여부 확인

\* 신청 시 작성한 정보 및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로만 자격요건 검토 진행

□ 추천대상 : 자격 요건검토 통과기업

\* 선정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를 통해 안내할 예정

\*\* 추천한 기업은 2025년 9월 지정심사에 한하여 가점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벤처나라 9월 지정심사 일정에 맞추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함

## 5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고 신청자에게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신청정보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②목록화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번호 미발급 창업기업의 경우 추천 제외 대상에서 제외됨

\* 세부 내용은 [별첨1]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매뉴얼 참고

\*\* 물품식별번호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8일 소요(근무일 기준)되므로, 공고 마감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필요

- 자격요건 검토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신청 시 기재한 정보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므로 신청 시 이메일주소 및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 □ 벤처나라 신청 시 유의사항 (자격요건 통과기업)

- 최종 추천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25년 8월 말 신청 시 작성한 이메일로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절차 및 향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임

\* 기한 내 미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 공고 신청자에게 있음

- 최종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한 내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추천으로 직접 신청\*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추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선택

- 기관추천 가점의 경우, 2025년 9월 지정심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추천 회차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 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신청 가능하며, 번호 미부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고 신청자에게 있음

#### □ 벤처나라 지정 결과 발표 관련 유의사항

- 최종 추천기업에 대한 지정심사는 조달청 벤처나라에서 진행하며, '25년 10월 초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결과 확인 가능함\*
- \* 벤처나라 지정 결과 발표 시, 신청기업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안내하지 않으므로 신청기업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필히 확인 필요

#### □ 문의처

- (접수방법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국번없이 1811-3773
- (기관 추천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공공구매파트 (044-410-1779)
- (물품식별번호 발급 문의) 목록정보시스템 (070-4056-6399)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벤처나라 지정신청 문의) 조달청 벤처나라 (042-724-7665, 7193)